[별지서식] <개정 2022. 4. 29.>

#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(정정)신청서

| 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신청인 | 성명 | | 주민등록번호 | - | 대상자와의 관계 | |
| | 주소 | (전화: ) | | | | |
| 대상자 | 성명(한자) | ( ) | | 생존여부 | □ 사망 □ 생존 □ 행방불명 | |
| | 본(한자) | ( ) | 출생연월일 | 주민등록번호 - | 성별 | □남 □여 |
| | 등록기준지 | | | | | |
| | 부 모 | 성 명 | 부: | | 모: | |
| | | 등록기준지 | 부: | | 모: | |
| 기록사항 | 사망의 경우 | 일시 | | 장소 | | |
| | 신분에 관한 사항 | | | | | |
| | 정정할 사항 | | | | | |

「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 제16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(정정)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귀하

※ 구비서류

1.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임을 인정한 서면 1부
2.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위원회에서 유족임을 인정한 서면 1부
3.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위 위원회의 결정서
4. 그 밖에 신분사항이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항에 관한 소명자료

수수료 없음

※ 등록기준지는 「호적법」(2007. 5. 17. 법률 제8435호로 폐지된 것)상의 본적을 말한다.